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96

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박 정·양경숙·김상희

도종환 • 윤후덕 • 강득구

전용기 · 정춘숙 · 유정주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프로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. 그러나 프로스 포츠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 행사는 이에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 수들이 금전적·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현행법 제18조에서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함.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선수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'표준계약서'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·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표준계약서의 제정·보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8조의2(표준계약서의 제정· 보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 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 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 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 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.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 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 다.